

위험할 땐 119
입거울 땐 129
보건복지부
대한의사협회

보건복지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(행정심판)시 유의사항 공지 협조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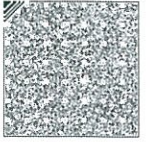
1. 평소 국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2. 보건의료인이 의료관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(행정심판)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“집행정지 인용 기간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3. 이에 각 해당 협회에서는 「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(행정심판)이 끝난 후 주의사항」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(행정심판)이 끝난 후 주의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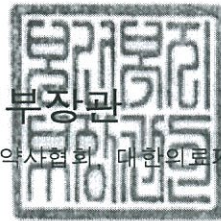
- **원고(신청인)가 패소했을 경우** :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, 본안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'선고'되면 그 다음 날부터(행정심판은 재결서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)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져
 - 행정소송은 법원 선고일 다음날부터 행정심판은 등기우편물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가 속행되므로 의료행위 등을 정지해야 하며, 1심 또는 2심 판결선고일 3주전에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(복지부에서 별도로 자격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음)
 - (단, 법원 판결문, 재결서에 집행정지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름)
- 법원(행정심판위원회)에서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집행정지 인용기간 이외의 기간에 행한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2년임
- ※, 소송중에는 당사자인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과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셔야만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,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

끝.

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간호협회, 대한약사협회,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

주무관 반명희 행정사무관 이영일 의료자원정책 과장 전결 2014. 10. 17. 임을기

협조자

시행 의료자원정책과-9858 (2014. 10. 17.) 접수

우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/ http://www.m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463 팩스번호 044-202-3925 / mjswan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(12.11-12, 부산)